

# 서울관광재단 예비비 사용 보고

의안 번호	
----------	--

제출년월일 : 2023년 11월 1일  
제출자 : 서울관광재단 대표이사

## 1. 제안이유

- 가. 「서울특별시 출자·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」 제22조의2제3항에 따라 출자·출연 기관이 예비비를 사용한 경우 분기별로 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해야함
- 나. 이에 서울관광재단의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하여 예비비 사용에 대하여 사용 전 미리 보고하고자 함

## 2. 주요내용

- 가. 집행 예정 기간 : 2023. 10. ~ 12.
- 나. 집행 예정 내역

(단위: 천원)

구분	예산	집행 예정액					잔액	집행 예정 내역
		1분기	2분기	3분기	4분기	계		
(고유사업) 서울 도심 야간관광 활성화	342,000	-	-	-	342,000	342,000	342,000	잠버리 및 태평 '카눈' 긴급 대응에 따른 추가 조성 및 운영비
(고유사업) 글로벌 축제 및 이벤트 연계 마케팅	145,000	-	-	-	145,000	145,000	145,000	중국 단체관광 허용에 따른 B2B 설명회 및 팸투어 추진

### 3. 참고사항

가. 제안근거 : 서울특별시 출자·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22조의2제3항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기 타 : 해당사항 없음

붙임 : 제안근거 1부. 끝.

※ 작성자 : 서울관광재단 기획예산팀 홍재선 팀장 (☎ 3788-0892)  
기획예산팀 이현아 대리 (☎ 3788-0872)

## 붙임

### 제안근거 \_ 서울특별시 출자·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

#### 제22조의2(예산 및 결산의 제출 등)

- ① 출자·출연기관은 예산이 성립되거나 변경된 후 15일 이내에 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예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.
- ② 출자·출연기관은 매 회계연도가 끝난 후 3개월 이내에 결산서를 작성하여 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.
- ③ 출자·출연기관은 예비비를 사용한 경우에는 분기별로 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. 다만, 보고시기가 폐회 중일 때는 의장과 상임위원장에게 우선 보고한 후 다음 회기 회의에서 안건으로 상정하여 보고한다. <신설 2019. 9. 26>